이천시 생활소음 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환경보호과

제정 2024 · 5 · 9 조례 제2081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및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·진동과 비산먼지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소음"이란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강한 소리를 말한다.
- 2. "진동"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.
- 3. "생활소음·진동"이란 「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」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 2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·진동을 말한다.
- 4. "먼지"란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.
- 5. "비산먼지"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.
- 6. "특별관리 공사장"이란 건축물 축조공사, 토목공사, 조경공사, 건축물 해체공사,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 장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이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이천시민(이하 "시민"이라 한다)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 - 1.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·진동 및 비산먼지 배출 억제 및 적 정관리에 관한 사항

- 이천시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
 - 2.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·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생활소음 · 진동과 비산먼지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
- 제4조(사업자의 책무)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·진동 및 비산 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1. 이천시의 생활환경 보호 시책 참여 및 협력
 - 2.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 과정의 관련 규정 준수
- 제5조(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)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 설치와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.
- 제6조(생활소음·진동의 측정방법) ① 생활소음·진동의 측정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.
 - ② 시장은 주택밀집지역,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·진동으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·진동 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수시로 소음·진동을 측정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·진동 측정 결과 생활소음·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은 법 제23조 등을 따른다.
- 제7조(특정장비 사용의 제한) 시장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 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·장비가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·진동 규 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 - 1. 특정장비의 동시 사용제한
 - 2. 특정장비의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(동절기 오후 5시) 이후 사용제한
 - 3. 규칙 제22조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
- 제8조(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) 공사장은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서 정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 특별관리공사장의 경우 다음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
 - 1. 수송 및 작업 차량 출입문을 설치할 것
 - 2. 분체상 물질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물 뿌림 반경 7m 이상, 수압 5kg/cm²

- 이상의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뿌림시설을 설치할 것
- 3.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·세차 이행 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
- 4.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는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도록 할 것
- 제9조(지도점검) 시장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.
 - 1.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 · 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행위
 - 2. 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
 - 3. 제5조에 따른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및 제7조에 따른 특정장비 사용 의 제한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
 - 4.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58조제4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
 - 5. 제8조에 따른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
- 제10조(소음·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) 시장은 사업자가 제7조 및 제8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생활소음·진동, 비산먼지 정도 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 및 억제시설의 설치 등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.
- 제11조(사업자의 자율참여) 시장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·진동과 비산먼지에 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